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100190 절도, 절도미수
피 고 인 A
검 사 설지은(기소), 최종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 결 선 고 2026.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5. 10. 10. 02:09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분리수거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관리소장인 피해자 C이 관리하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현 옷, 프라이팬, 냄비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5. 10. 11. 02: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



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현옷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5. 10. 15. 02:5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현옷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5. 10. 11. 04:00경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내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분리수거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불상의 알루미늄 마대자루 2개를 미리 가지고 온 리어카에 옮겨 절취하려고 하던 중 때마침 순찰 중이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작성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B아파트 범행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일자별 범행 영상 첨부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기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수범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있고, 특히 최근 2~3년 사이에 연달아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재활용 대상물을 절취한 범행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도 피해품의 가치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07

판사 안경록 _____